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”을 “상용화가 되었으나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”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인증기간의 연장신청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<u>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</u> 로 하되,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.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인증기간의 연장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용화가 되었으나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술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</u>